

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
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 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
- 본 조례는 기존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상 불분명하던 상호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그 근거와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, 시의회의 상호연결 등 교류 협력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1조의 경우, 서울특별시의회와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등 교류협력 활성화 근거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, 안 제2조의 경우 교류협력 및 상호결연

에 대한 사항을 정의로 규정하였습니다.

- 또한, 안 제3조의 경우, 의장의 책무로서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 추진 시,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의 최우선 고려는 물론, 교류협력을 통한 취득 정보를 시민에게 홍보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5조는 상호결연의 원칙 등을 규정해 국외 지방의회와의 상호결연 체결은 물론, 상호결연 체결 시 의회와 대상 국외 지방의회 간 상호이해 증진 여부 등에 대해 고려하는 등 상호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의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의 경우, 상호결연의 체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, 의장과 국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 등 상호결연 성립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하고자 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상호결연의 취소 조항을 마련해 의정 활동 전반의 공동 발전에 저해되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
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